

「2026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소상공인 2차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 필수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대상 수행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3회 이상 연락불응에 따른 미선정·선정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1. 사업안내

- **(지원내용)** 플랫폼사와 협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한 단계별 교육 (1단계 → 2단계) 운영 및 판로 진출 지원
 - **(¹단계 역량강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30H 오프라인 현장교육
 - **(²단계 실전심화교육)** ¹단계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중 30%를 선발하여 1:1 컨설팅 및 실습교육 연계지원
- **(모집규모)** 소상공인 500명 내외

구분	교육과정	모집규모	교육장소
국내	카카오톡딜	200	서울 강남구
해외	큐텐재팬	200	서울 중구
특화	오아시스	100	서울 용산구

- **(지원대상)** 구분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으로서, 국내·외 매출 확대 또는 입점을 위한 현장 교육 참여 의지가 있는 자
 - **(지원대상) 하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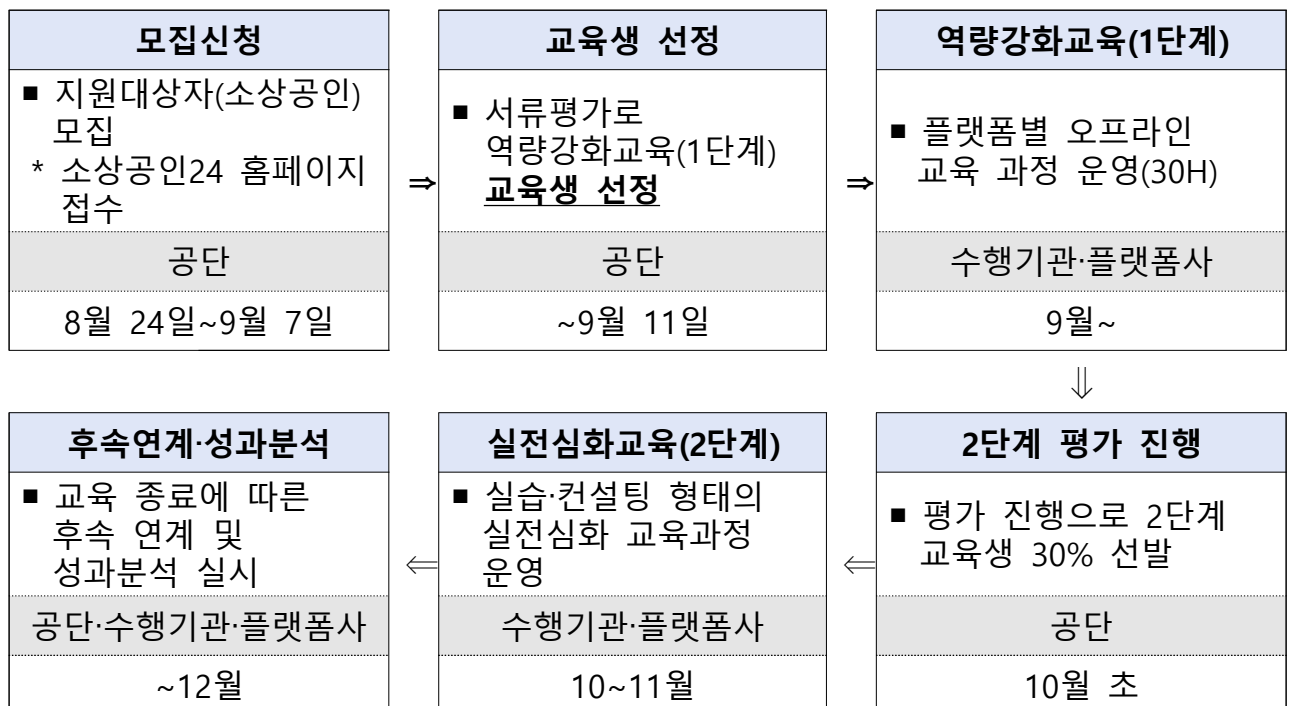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

구 분	지원구분	자격요건
국내·해외 (입점필수)	일반지원	-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이 1회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
	우선지원	- 신청 플랫폼에 입점한 '21~'25년 디지털특성화대학 수료생
특화 (입점무관)	일반지원	-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기준, 특화 플랫폼 제품군(식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우선지원	-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기준, 특화 플랫폼 제품군(식품)을 판매하는 '21~'25년 디지털 특성화대학 수료생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및 선정 취소

요 건	세부 내용
① 중복수혜	○ '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사업 선정 소상공인
② 자격요건 미충족	○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신청 플랫폼 미입점(또는 매출액 미발생) 등 자격요건 미충족
③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4)
④ 휴업·폐업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
⑤ 비영리 영위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⑥ 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사업참여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교육생
⑦ 허위기재	○ 사업 신청 시 허위 내용 및 문서 제출이 적발된 교육생
⑧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중인 경우
⑨ 기타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 (예시) 서류보완 요청에도 보완기간 내 미보완 등

□ 운영절차



2. 세부지원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역량강화교육(1단계)

연번	구분	플랫폼명	수행기관	교육내용(요약)
1	국내	카카오 톡딜	유디임팩트 (언더독스)	- 카카오톡딜 플랫폼의 이해와 운영전략 - 카카오 톡채널 메시지 발송 노하우 코칭 - AI활용 상세페이지 제작 및 광고 기획 - 카카오 쇼핑라이브 이해와 전략
2	해외	큐텐재팬	한국마케팅 진흥원	- 큐텐재팬의 기본 이해와 샵 구축 - 검색 노출 확대를 위한 메커니즘 분석 - 매출 향상 및 인지도 확대를 위한 샵 세팅 - 판매운영 및 고객 관리 효율화 실무
3	특화	오아시스	동아일보	- 오아시스 마켓 운영 및 매출 구조 이해 - 브랜드 스토리텔링 기획 및 SNS 마케팅 전략 - 일반·신선 식품 물류 및 배송 재고 연동 관리 - 라이브커머스 운영 및 쇼호스트 화법 실습

☐ 실전심화교육(2단계)

- (고도화 컨설팅) 소상공인 매출도약을 위한 맞춤형 1:1 오프라인 컨설팅 3회 이상 지원
- (심화특강) 유행·트렌드, AI, 데이터 분석 등 사업 고도화 및 디지털 활용을 위한 심화 특강 제공
- (실습연계) 매출도약을 위한 기획전, 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등 자체 판촉 연계지원(기관별 상이)

※ 2단계 평가 ※

- 1) 역량강화교육(1단계) 수료생 대상 우수성과자 **30%를 선발**하여 실전심화교육(2단계) 지원
- 2) 교육 참여율, 적극도, 매출규모 및 증가율, 사업 전후 성과, 제품 차별성 등 전반적인 사업 성실도·제품 사업성으로 평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9. 7.(월) 18:00까지

* 신청·선정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연번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신청서	○ 소상공인24 온라인 작성	
2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 동의 시, 아래 서류 (3~8번) 생략 가능 ○ 미동의 시, 아래 서류 (3~8번) 별도 첨부	○ 동의 시, 5~8번 대표자 서류 별도 첨부 (법인 별도 첨부 X) ○ 미동의 시, 아래 서류 (3~8번) 별도 첨부 (대표자, 법인 모두 제출)
3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 유효기간 내 발급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 1번 신청서와 동일 업종, 동일 주소 증명원 제출	
5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대표자 확인서 제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대표자, 법인 확인서 둘 다 제출
6	국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내 대표자 증명서 제출	○ 유효기간 내 대표자, 법인 증명서 둘 다 제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내 대표자 증명서 제출	○ 유효기간 내 대표자, 법인 증명서 둘 다 제출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유효기간 내 대표자 증명서 제출	○ 유효기간 내 대표자, 법인 증명서 둘 다 제출

* 소상공인24 보완요청 시, 보완 기간 내 보완완료 필요

** 마이데이터 오류로 인해 자료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음

4.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자격검증(적/부) → 선정평가(일반지원)* → 결과통보

* 우선지원 요건 충족 시, 별도의 평가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나 서류 보완요건 미충족, 연락두절 및 제3자 개입 등 불충족 요건 발생 시 선정취소

○ **(자격검증)** 소상공인 여부, 지원대상 및 신청제한 요건 확인

- 서류 보완요청 미이행 시, 자격검증 부적합으로 판단하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일반지원 대상은 참여의지 및 사업 적합성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서면평가) 처리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정성	성장가능성	• 주요 판매 품목 확인 및 브랜드 보유 여부 등 사업 성장 가능성	40
	참여의지	• 신청 배경, 브랜드 소개 등 온라인 진출 및 교육 참여 의지	30
정량	지원적합성	• 플랫폼 활용 정도 : 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 플랫폼 입점 기간	30
		만 3년 이상 만 2년 이상 만 1년 이상 만 1년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합 계			100

< 동점자 선정 기준 >

- ① 평가항목 '참여의지' → '성장가능성' → '지원적합성' 순 고득점 소상공인 선정
- ②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위원장 평가 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함

□ **(선정안내)** 소상공인24(www.sbiz24.kr) 및 수행기관 개별 연락을 통한 선정 안내

5. 기타사항

□ 교육사항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은 불가하며 역량강화 교육(1단계)은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현장 출석이 필수입니다.
- 수료기준은 과정별 교육 출석률의 80% 이상으로, 출석 미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 제출 서류 보완 필요시, 신청인이 기존 설정한 방법*(카카오톡, SMS, 이메일, 국민비서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알림이 갑니다.
* 소상공인24 마이페이지 내 기본정보에서 확인 가능
- 본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 교육으로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교육안내는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연락이 갈 예정이오니 연락 불응에 따른 선정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본 교육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경영여건·나이 등 신청의 제약으로 인한 친·인척, 교육 멘토 등 관계자의 조력을 허용하나, 신청 미인지, 강요,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 대리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만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은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등 수혜 가능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최대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대표자가 다른 법인으로 다른 교육과정(플랫폼)에 선정된 경우에도 한가지 교육과정 수수료만 가능함

6. 문의처

☐ 교육과정 문의

연번	플랫폼명	수행기관	문의처
1	카카오 톡딜	유디임팩트 (언더독스)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fCPxgT 연락처 : 02-3675-2202
2	큐텐재팬	한국마케팅진흥원	이메일 : kr_marketing@naver.com 연락처 : 02-743-7332
3	오아시스	동아일보	이메일 : merrytidbit@naver.com 연락처 : 070-7209-3704

☐ (소상공인24 시스템 관련 문의) ☎1644-5302

☐ (사업신청 관련 문의) 온라인판로팀 (☎042-363-7812, 7822~3)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참고 2

소상공인24 신청 안내

[소상공인24 신청 안내]

The screenshot shows the '소상공인24' (Small Business 24)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지원사업소개' (Introduction), '지원사업신청' (Application), '마이페이지' (My Page), '소식방문' (News), '이벤트' (Event), and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공고조회' (Notice Search) and features a search bar with filters for '공고종류' (Notice Type), '부담부담' (Burden), '신청' (Apply), and '조회' (Search). Below the search bar is a table listing various notices, including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and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기본 정보 > 기관/업체 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 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②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③ 신청공고 클릭 (공고명) > ④ 지원신청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②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방법

① 상시근로자 수와 ② 매출액 규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4. 11. 20	'26. 2. 28	(직전 사업연도) '25년 1월~'25년 12월
예시2	'25. 3. 5		(최근 12개월) '25년 3월~'26년 2월

②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4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